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 31. 제천시장
- 회부일 : 2009. 9. 2.
- 상정일 : 2009. 9. 9.(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 김동석)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기동감찰 결과 처분요구 반영 및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 변화에 따라 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축제추진위원회 심의 기능을 수행 기능으로 변경 (안 제2조)
-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항 신설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광신)

- 본 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 까지 20 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09년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 본 조례안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을 변경하고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는 현 조례상 심의기능만 있고 축제를 주관하는 기능이 없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행사보조금을 보조 받아 축제를 개최한 사실이 2009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

수시 감찰반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심의”기능을 “수행”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 추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신설하고 사무국장과 운영직원을 두고자 하는 조항으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2005. 4. 27 일부개정]”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국을 신설하고 직원을 두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나 (구법에는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 현 조례상 사무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200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차장을 2004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임명하고 2005년부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집행기능이 없는 위원회의 행사추진과 조례상 없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이유는?(최종섭 위원)
- 행안부의 구체적 지적사항과 현 조례 제10조에 기타 운영세칙이 있음에도 운영세칙을 만들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유영화 위원)

나. 답변요지 <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

- 행안부 지적전에는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집행을 했으며, 본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 심의기능만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세칙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겠음.

5. 소수 의견

“ 없음 ”

6. 토론 요지

“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